

# 동아시아서지문헌연구소 규정

시행: 2022. 12. 01.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동아시아서지문헌연구소(Center for East Asian Philology, 이하 “본 연구소”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동아시아의 서지 문헌학에 대한 자료를 수집, 정리, 목록화하여 통합적 연구 데이터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의 문학 및 문화의 상호교류 현상을 고찰하여 동아시아 서지 문헌학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동아시아 문헌, 문화, 역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조사 및 수집을 통한 목록화 정리 작업, 자료 공유
2. 교내 및 외부 연구자들과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 연구 역량 강화
3. 해외 연구자 초빙 및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학술교류 사업 증대
4. 해외 연구자 초빙 및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학술교류 사업 증대
5. 동아시아 서지 문헌 분야에 부족한 연구자 육성을 촉진
6. 연구 자료집 및 연구소 총서 발간을 통해 연구 토대를 마련
7. 동아시아 이외의 연구 분야와 개방적인 학문교류 환경 조성
8. 연구소 발간 문헌 및 자료와 정보 등 공동 활용
9. 연구 결과물을 해외 학회 및 학술지에 발표, 게재하여 연구 교류 강화
10. 기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연구 사업 등을 시행

제4조(소재지)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

제5조(조직) ① 본 연구소는 소장 1인과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을 두며, 자문위원 2인을 둔다.

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소장은 소관위원회의 심의와 소속 대학(원)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,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
④ 각 분야의 상임위원은 교내·외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, 해당 분야의 연구 활동을 총괄한다.

⑤ 본 연구소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아래 공동연구원과 일반연구원을 둔다.

1. 중국 분야 : 중국 서지 문헌과 관련된 연구과제 기획과 운영에 대한 업무
2. 일본 분야 : 일본 서지 문헌과 관련된 연구과제 기획과 운영에 대한 업무
3. 한국 분야 : 한국 서지 문헌과 관련된 연구과제 기획과 운영에 대한 업무

제6조(연구원의 자격) 본 연구소 연구원의 자격 등은 「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7조(조직 및 운영)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연구소에는 소장, 자문위원, 상임위원, 공동연구원, 일반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본 연구소의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③ 소장은 연구원들의 추천을 받은 소수의 연구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본 연구소의 조직, 운영체계 및 사업계획 수립
3. 본 연구소의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과제 선정
4. 연구원 등의 인사 추천
5. 본 연구소의 주요사업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평가,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감사

제9조(자문위원회) 본 연구소의 주요 사업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평가위원회) 본 연구소의 주요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,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재원) 본 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한국연구재단 등 국공립 기관의 용역 사업비
2. 본교의 연구소 지원비
3. 보조금 및 기부금
4. 기금 및 기타 수익금

제12조(회계) ① 본 연구소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
②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3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

#### 부칙

본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로 시행한다.

#### 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